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

☐ **절차서번호** : KORAD SI10 개정번호: 2

☐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구 분	소 속	직 위	성명 (서명)	일 자
작성자	안전총괄팀	과장	이 재 석	'25. 12. 15.
검토자				
승 인	안전총괄팀	팀장	이 승 현	'25. 12. 15

작성 및 승인 이력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2	1/1

개정번호	작성부서				승인자	승인일자	비고
	소속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0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2.12.05.	신규제정
1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3.12.27.	전면개정
2	안전총괄팀	이재석			이승현	'25.12.15.	일부개정

개정 이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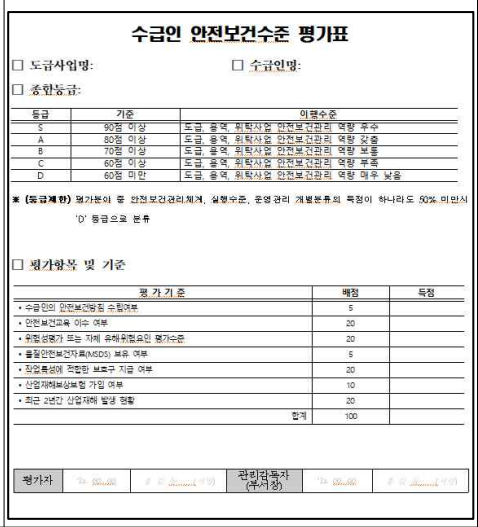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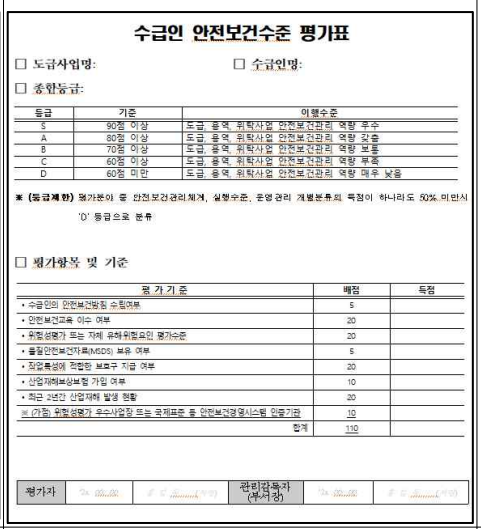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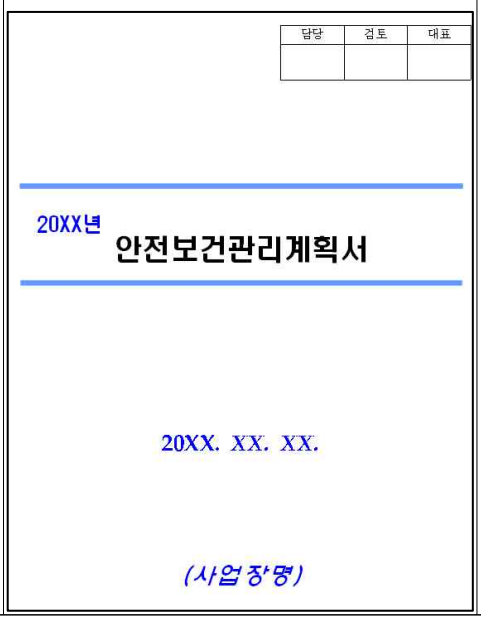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2	1/1

개정번호	승인일자	개 정 내 용 (요 약)	비 고
0	‘22.12.05.	신규제정	
1	‘23.12.27.	도급사업 안전관리 업무 현행화 및 구체화	정부평가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반영
2	‘25.12.15.	적격 수급인 선정 시 가점제도 신설 및 재평가 절차 반영 등	정부평가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반영

개정 요약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1

<table>
<tr><th>항목번호</th><th>현 행</th><th>개 정 (안)</th><th>비고(개정근거)</th></tr>
<tr><td>6.2</td><td>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일 경우 또는 해당 도급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과업수행에 대한 적격성이 이미 확인된 수급인(6.5항에 따른 적격수급인 관리대장에 등록된 수급인)의 경우 6.0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td><td>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td><td>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4</td></tr>
<tr><td>6.2.1</td><td>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평 가 기 준</th><th>배점</th></tr>
<tr><td>•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td><td>5</td></tr>
<tr><td>•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td><td>20</td></tr>
<tr><td>•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td><td>20</td></tr>
<tr><td>•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td><td>5</td></tr>
<tr><td>•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td><td>20</td></tr>
<tr><td>•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td><td>10</td></tr>
<tr><td>•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td><td>20</td></tr>
<tr><td>합계</td><td>100</td></tr>
</table></td><td>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평 가 기 준</th><th>배점</th></tr>
<tr><td>•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td><td>5</td></tr>
<tr><td>•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td><td>20</td></tr>
<tr><td>•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td><td>20</td></tr>
<tr><td>•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td><td>5</td></tr>
<tr><td>•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td><td>20</td></tr>
<tr><td>•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td><td>10</td></tr>
<tr><td>•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td><td>20</td></tr>
<tr><td>※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td><td>10</td></tr>
<tr><td>합계</td><td>110</td></tr>
</table></td><td>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4</td></tr>
<tr><td>6.5</td><td>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2년간 적격성을 인정한다.</td><td>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격성을 인정한다.</td><td>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4</td></tr>
<tr><td>6.6</td><td><신설></td><td>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td><td>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td></tr>
</table>

<table>
<tr><td></td><td></td><td>단위로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td><td>심사 개선 필요사항-14</td></tr>
<tr><td>8.4.2</td><td>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td><td>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일에 맞춰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td><td>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4</td></tr>
<tr><td>8.5.2</td><td>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는 “(KORAD CP09) 부적합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td><td>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는 “(KORAD SP14) 부적합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td><td>안전보건문서 체계 고도화에 따른 번호 수정</td></tr>
<tr><td>붙임
10.1</td><td>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 기준 | 이행수준
S | 9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 8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 7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 6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 60점 미만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1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합계 | 100
평가자 | 관리감독자 (부서장)</td><td>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 기준 | 이행수준
S | 9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 8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 7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 6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 60점 미만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1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 10
합계 | 110
평가자 | 관리감독자 (부서장)</td><td>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4</td></tr>
<tr><td>붙임
10.5</td><td><신설></td><td>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 검토 | 대표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X. XX.
(사업장명)</td><td>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5</td></tr>
</table>

목 차

1.0 목적

2.0 적 용 범 위

3.0 참조 및 유의사항

4.0 용어정의

5.0 역할 및 책임

6.0 적격 수급인 선정

7.0 적격 수급인 선정 여부 및 적정성 점검

8.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9.0 기록보존

10.0 붙임

1.0 목적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이라고 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2.1 공단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하에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및 평가에 적용하며, 단순구매 또는 사무업무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수급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실제 투입되는 작업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수급인 평가를 실시한다.

3.0 참조 및 유의사항

3.1 참조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3.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1.3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적격 수급인 선정)

3.1.4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3.2 유의사항

3.2.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확보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인이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4.0 용어정의

4.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2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공단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4.3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3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4 종사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되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을 말한다.

4.5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6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4.7 안전보건총괄부서

공단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여부의 모니터링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본사 안전보건전담부서를 말한다.

4.8 안전보건담당부서

사업장 별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고 시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부서를 말한다.

4.9 수요부서

수요부서란 도급을 희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자체계약을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0 역할 및 책임

5.1 이사장

5.1.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의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한다.

5.2 안전보건총괄부서장

5.2.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5.2.2 수요부서의 해당 절차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5.3 안전보건담당부서장

5.3.1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5.3.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5.4 수요부서장(관리감독자)

5.4.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에 따라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수급인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한다.

5.5 수급인(관계수급인)

5.5.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일체의 활동을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5.5.2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도급인의 요청에 협조한다.

5.5.3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5.5.4 수급인은 도급인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작업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요청 또는 개선한다.

6.0 적격 수급인 선정

6.1 도급사업 시 조달청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도급사업의 종류별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등을 따르며, 수요부서 자체계약 시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는다.

1)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교육
3)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7)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6.2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6.2.1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 가 기 준	배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6.2.2 평가에 대한 세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공단이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2)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운전 용역 등

* 공단 사업장 출입 및 공단 사업장 내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단순 구매계약 및 위탁 사업은 제외

6.2.3 수요부서는 도급사업을 희망하는 수급인으로부터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 받는다.

6.2.4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활용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이 때, 도급작업장에서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6.3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는 다음의 득점기준에 따라 수급인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3.1 80점 이상 득점: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도급사업

6.3.2 70점 이상 득점: 산업재해발생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중 화재폭발 우려 작업,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도급사업

6.3.3 60점 이상 득점: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

6.3.4 60점 미만 득점: 수급인 선정 불가

6.4 수요부서는 수급인으로부터 “붙임 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6.5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격성을 인정한다.

6.6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단위로 연

장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7.0 적격 수급인 선정 적정성 확인

7.1 안전총괄부서장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도급사업에 대해 “6.0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반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7.2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미흡사항 발견 시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수요부서장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수요부서장은 해당사항을 2개월 내에 조치 후 결과를 안전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3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을 바탕으로 조치하며 안전보건총괄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8.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8.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인프라를 지원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8.1.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안전보건협의체”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8.1.2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8.1.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8.1.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8.1.5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8.1.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8.1.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이상)

8.1.8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현장대리인, 공단의 관리감독부서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작업중지 요청제 이용

8.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8.2.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

1) 작업일이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 수급인

2) 연간 총 작업일이 6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 수급인

8.2.2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8.2.2.1. 주요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공단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

8.2.2.2 회의 개최

1)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 에게 회의내용 및 관련 자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통보 후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내·외부적인 요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실시 할 수 있다.

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가) 공단 구성원일 경우, 차상위자 또는 직무대행자

나) 관계수급인일 경우, 사업장 내 근무하는 직무대행자 또는 업무 관계 직원

8.2.2.3 회의 결과

1)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참석인원

다) 협의 내용 및 기타 건의사항 등

2)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 등 회의록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8.3 작업장 순회점검

8.3.1 작업장 순회점검은 수요부서장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부서장이 실시한다.

8.3.2 점검자는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1) 구내식당

2) IT지원실

8.3.2.2 처분시설

1) 1구역: 인수저장건물, 폐기물건물, 지원건물(Ⅰ)

2) 2구역: 폐수처리건물, 장비수리실, 차고

3) 3구역: 지상지원경비실, 전기공급건물, 지상지원시설 옥외 설비, 지원건물(Ⅱ)

4) 4구역: 동굴설비건물, 동굴출입통제건물, 건설·운영·하역동굴

5) 5구역: 기자재창고, 방폐물 운반용기 유지보수 정비고, 코라디움, 주

정문경비실, 콘크리트 시험실

6) 6구역: 본부 사옥(3개동), 환경실험실, 방폐물 처분용기 보관 창고, 배수다중화건물

8.3.3 순회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3.4 점검자가 휴가, 출장 등 장기간 부재로 인해 차수별 순회점검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선정하고, 안전관리부서장에게 알린다.

1) 1순위: 타 부서의 관리감독자

2) 2순위: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

3) 3순위: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8.4 합동 안전보건점검

8.4.1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위한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점검반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2) 점검반원: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수요부서장, 관계수급인 및 각 관계수급인 근로자 1명

8.4.2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일에 맞춰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1) 구내식당

2) IT지원실

8.3.2.2 처분시설

1) 처분시설 내 주요 시설물 및 설비를 구분하여 시행

8.4.3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5 시정조치요구

8.5.1 점검결과 근로자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8.5.2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는 “(KORAD SP14) 부적합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

9.0 기록보존

9.1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이행결과 등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10.0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10.4 적격 수급인 대장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기준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관리감독자 (부서장)	'2x. 00. 00.	홍 길 동 (서명)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우수	-	미흡
	10	-	3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우수	-	-
	10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

③ -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인 또는 서명*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

적격 수급인 대장

0000년 00월 00일 현재

순번	업체명	주요작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최초확인일	유효기간	비고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검토	대표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X. XX.

(사업장명)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2.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3.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4.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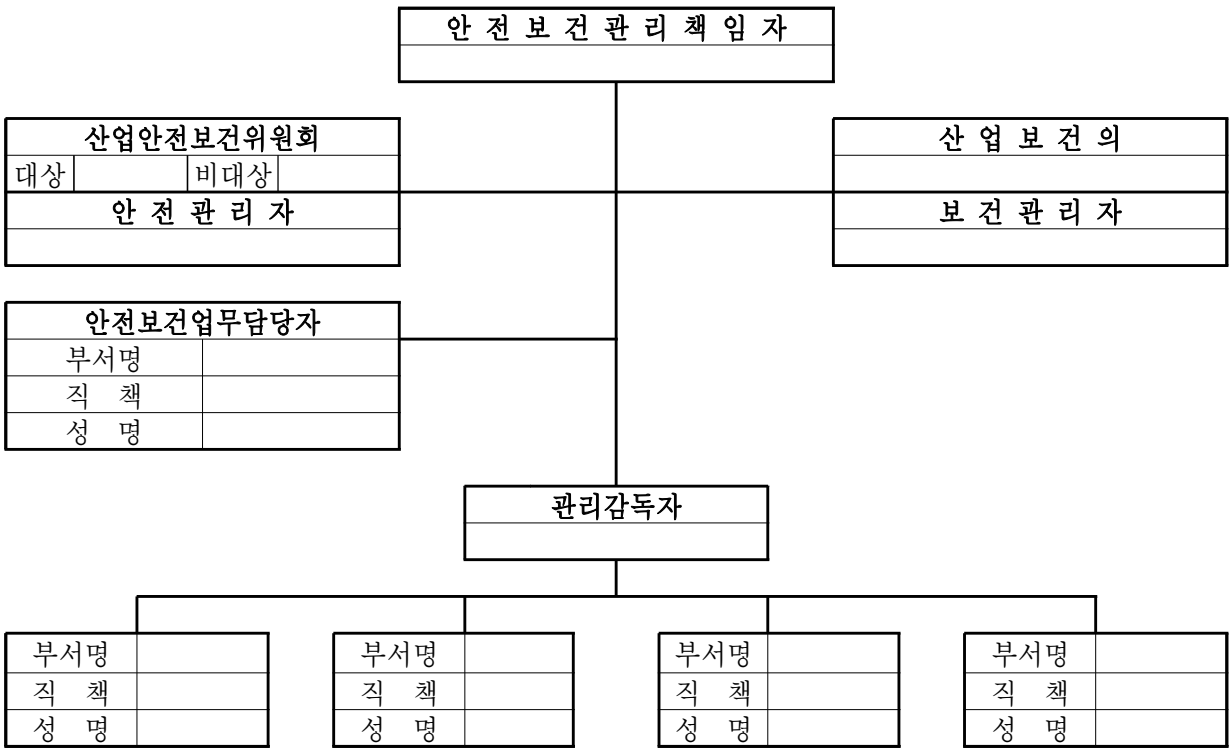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업종	[코드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업종	[코드번호] 업종		
근로자수 : 명	사무직		사무직외		전화번호	
	남	여	남	여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00000	○ ○ ○	

2 안전 · 보건관리체제



3 안전보건교육 이수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마.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해당교육 체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위험성평가 실시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빈도 x 강도)	감소대책	개선결과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대응조치
16~20	매우높음	허용불가능	즉시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낮음		

❍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2								
3								
4								
5								

❍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예정일	개선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1		□ □ □ 상 중 하					
2		□ □ □ 상 중 하					
3		□ □ □ 상 중 하					
4		□ □ □ 상 중 하					
5		□ □ □ 상 중 하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MSDS작성일자)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특별관리 대상여부	특수검진 대상여부

6 개인보호구 지급

❍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7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